

# 공 시 송 달 공 고

군도5호선 도로에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이 무단 설치되어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“폐문부재등의 사유”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(송달)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3. 10.

진 도 군



1. 제목 :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(지산면 보전리 344-13도)
2. 법적근거
  - 『도로법』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및 같은법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
  - 『도로법』 제73조(원상회복)
3. 예정된 행정처분명 : 도로 원상회복(자진철거) 명령
4. 물건 대상지 : 지산면 보전리 344-13 도로(보전로 218 앞 도로변 가설건축물)
5. 정비대상 : 도로무단점용 시설물(가설건축물) 일체
6. 공시송달 대상 : 윤\*\*(주소불명)
7. 공고기간 : 2026.3.10. ~ 2026.3.24.(14일간)
8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9. 공고내용
  - 군도5호선 도로(지산면 보전리 344-13)에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『도로법』 제73조(원상회복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년 3월 31일(화)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기한 내 조치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『행정대집행법』 에

따른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『행정대집행법』 제2조에 따라 그 비용등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[도로무단점용 시설물 등 정비개요]

- 물 건 지 :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344-13 도로
- 정비대상 : 도로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(10mx5m)
- 의견제출 : 2026.3.31.(화)까지
- 제출처 : 전라남도 진도군청 3층 건설과 토목팀

10.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라남도 진도군 건설과 토목팀(061-540-34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  
2. 현황사진 1부. 끝.

